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95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박준태
이종배 · 조지연 · 김성원
주호영 · 우재준 · 정성국
조은희 · 김예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이관·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

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 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의4(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한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2.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 지원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사회통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①</u> <u>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u> <u>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재</u> <u>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u> <u>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u> <u>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u> <u>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u> <u>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u> <u>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u> <u>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u> <u>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u> <u>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u> <u>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u> <u>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u> <u>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u> <u>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u> <u>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u>할 수 있다.</u> <u>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u>

<신 설>

<신 설>

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의4(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한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2.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
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
기 위한 체류 지원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
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
내 체류 재한외국인의 사회통
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사항

③ 사회통합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회통합위원회의 위촉 및 해
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
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